

'인신매매등'에 대해 바로알기

Q. 인신매매 피해자는 모두 납치 당하나요?

아닙니다. 인신매매등은 단순히 '강제로 데려가는 행위(납치)'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허위 광고나 지인 등의 소개로 스스로 가해자와 연루되거나,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Q. 인신매매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가요?

피해자는 아동·청소년, 장애인, 여성뿐 아니라 다양하게 발생합니다. 남성은 주로 노동력 착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Q. 인신매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1 처음부터 위력 등을 이용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하거나
- 2 가해자가 피해자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정서적으로 통제하거나 언어·정보 부족으로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.
- 3 또한 협박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괴롭혀 피해자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.

인신매매등 피해자, 주변에서 먼저 발견해주세요!

☎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
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
1600-8248

✉ 피해자 확인서 발급 신청
8248@stop.or.kr



신고의무시설용

- 1 속아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
- 2 신분증을 빼앗겨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누군가
- 3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누군가

※ 위는 인신매매등 피해의 일부 사례입니다.

인신매매등 피해자, 주변에서 먼저 발견해주세요!

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
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

1600-8248



성평등가족부



한국여성인권진흥원



성평등가족부



한국여성인권진흥원

피해지원 1

'식별지표'를 적용해 보세요

- 식별지표 사용은 피해자를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.
- 피해가 의심된다면 식별지표를 사용하여 인신매매등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행위

[요소] 모집, 운송, 은닉, 인계·인수

- 예시① 한국 입국을 위해,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나요?
- 예시② 중개업자 혹은 업주에 의해 이동해야 했나요?
- 예시③ 이동시킨 사람에 의해 제3자에게 인계되었나요?

수단

[요소] 위력, 위계, 그 밖의 수단

- 예시① 협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, 고립되었나요?
- 예시② 설명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지만 따를 수 밖에 없었나요?
- 예시③ 모집인에게 진 부채가 있거나, 통장, 신분증 등 서류를 본인이 가지지 못하게 했나요?

착취 목적

[요소] 성매매, 성적 착취, 노동력 착취, 장기 적출

- 예시① 성매매를 강요당했나요?
- 예시② 계약서에 없는 일을 강요하고, 지속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았나요?
- 예시③ 자유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 둘 수 없었나요?

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원본은 누리집(www.stop.or.kr)에서 확인하세요!



피해지원 2

'피해자 확인서'를 신청하세요

- 인신매매등 피해자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에도 피해자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[확인서 발급 절차]



상담

피해자 식별 후 필요시 인신매매등 피해자 여부 등 상담
 (국번없이)1600-8248 (평일 10:00~17:00)



접수

확인서 발급 신청서와 첨부서류 이메일(8248@stop.or.kr) 또는 우편 제출
 신청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(www.stop.or.kr)에서 다운로드



조사

피해자 거주지 지방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피해자 인터뷰(피해지원기관 통석 가능)



판정

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피해자 여부를 심의·판정(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)



발급

확인서를 발급
 사례에 따라 보류 등으로 판정될 수 있음

신청 시 필수서류

신분증 사본, 피해지원기관의 위임장, 인신매매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기타

출입국사실증명서(외국인),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필요시), 진단서(필요시) 및 근로계약서 등(근로자의 경우) 피해 사실과 관련 있는 서류

피해지원 3

'구조지원비'를 신청하세요

- 피해자는 확인서 발급 후 구조지원비(생계·법률·의료·취업·귀국·통역 등)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와 아동·청소년, 장애인은 피해자 확인서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[지원 항목]

생계지원	1개월 약 730,500원(3개월, 최대 6개월) ▶ 중복수급 불가, 피해자 지원시설 미입소자
의료비지원	500만 원 ▶ 약제비, 진단서 발급 치료 및 의료상담 등
법률지원	심급별로 600만 원 ▶ 변호사 수임료, 법률지원의 제비용
통역지원	150만 원 ▶ 의료·법률 지원에 필요한 통번역비
귀국지원	실제비용 ▶ 귀국 시 소요비용(항공료, 교통비 등)
취업지원	150만 원 ▶ 한국어교육 자격증 수업료, 시험비용 포함

[이용 절차]



- 피해지원기관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, 지원기관이 없는 경우 개인 신청 가능
- 의료비지원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병원에 직접 정산